

창원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63379(본소), 2018나6338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기계대금]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63379(본소), 2018나63386(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4 선고 2016가단458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기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변론 종결2019. 12. 20.

판결 선고2020. 1. 31.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4. 선고 2016가단4583(본소),

2016가단4699(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1,174,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51,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664,001원¹⁾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제대기 납품대금, 2015. 1. 7.자 견적서(이하 '견적서'라 한다)에 기한 납품대금, 소모품 및 부속품 대금의 합계 151,174,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110,510,000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51,510,000원 및 지연손해금 초과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피고의 각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8. 19. 원고와 피피(P·P) 제대기 1셋트 등(품명 J, 이하 '이 사건 제대기'라 한다)을 3억 6,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5.경 이 사건 제대기의 납품·설치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대기 납품대금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제대기 부품 및 재봉기 등 총 14종에 대한 별도의 견적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10. 반자동 재봉·폴딩기(중고) 21,000,000원', '13. 재봉기(신품)

2세트 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대기의 잔대금 1억 원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2)를 작성·교부해주었다.

바. 피고와 원고는 2016. 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합의서

채권자 피고 / 채무자 원고

1. 청구채권 : 123,700,000원

※ 청구채권 산출근거

① 지불약정서 1번 항목에 따라 100,000,000원

② 부가가치세 10,700,000원(= 2014. 9. 30.자 제대기 계약금 37,000,000원 및 2014. 10. 30.자 제대기 계약금 7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건)

③ 중고 기계 2대 13,000,000원(= 21,000,000원 중 8,000,000원 영수)

2. 지불시기 및 금액

1) 2016. 2. 5. 30,000,000원

2) 2016. 3. 5. 30,000,000원

3) 2016. 5. 5. 63,700,000원

합의자 피고

연대보증인 C회사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요지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서 제대기 납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100,700,000원, 견적서에 기한 재봉기 납품대금 73,000,000원, 소모품 및 부속품 납품대금 36,474,001원의 합계 210,174,001원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9,000,000원을 뺀 나머지 151,174,001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반소청구 중 제대기 납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110,700,000원³⁾ 및 견적서에 기한 중고 재봉기 대금 13,000,000원의 합계 123,700,000원에서 호이스트 교체비용 3,190,000원과 금속검출기 비용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10,1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견적서에 따라 원고에게 신품 재봉기 2대를 대당 30,000,000원에 납품하였으므로, 원고는 신품 재봉기 2대 납품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1. 12.부터 2015. 7. 17.까지 원고에게 재봉기 소모품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 그 합계액이 36,474,001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위 소모품 및 부속품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당심에서 소모품 및 부속품 납품대금에 관한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항소취지에 따라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도 불복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신품 재봉기 2대 납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일응 신품 재봉기 2대를 원고의 공장에 납품·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2015. 1. 7.자 견적서(갑 3호증)에는 '담당 E 사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E은 원고로부터 공장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C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점, ② E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은 원고로부터 공장 전체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에게 신품 재봉기 2대를 직접 주문하였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금융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잔대금도 C(E)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증언한 점, ③ 2015. 1. 9.자 지불약정서(피고가 제출한 을 15호증) 기재만으로 매매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합의서(피고가 제출한 을 16호증)에는 중고 재봉기 대금(13,000,000원)과 달리 신품 재봉기 대금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만약 원고가 신품 재봉기 매수인이라면 합의서의 청구금액에서 그 대금을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신품 재봉기의 실제 사용자는 C 업체(E)이므로, 위 C 업체가 매수인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품 재봉기 2대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소모품 및 부속품 대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소모품 및 부속품 공급기간은 2015. 1. 12.부터 2015. 7. 17.까지인데, 피고의 2015. 12. 14.자 및 2016. 5. 13.자 가압류 신청서와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그 대금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가압류까지 되어 있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체적인 채권채무를 놓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기간 동안 제대기 및 재봉기를 실제 사용하고 소모품을 소비한 회사는 원고가 아니라 C 업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제대기 견적서(갑 1호증의 1)의 내역서 제3항에는 '인쇄 실린더 스틸 20개, 인쇄 실린더 기어 스틸 20개, 컷팅 사이즈 기어 스틸 5개' 등이 무상 공급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모품 및 부속품들을 매수하거나 유상으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5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역시 제1심에서 이를 대금에서 공제하여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부분 공제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이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반소청구 중 제대기 납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110,700,000원 및 견적서에 기한 중고 재봉기 납품대금 13,000,000원의 합계 123,700,000원에서 호이스트 교체비용 및 금속검출기 비용 합계 13,190,000원을 뺀 나머지 110,51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피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59,000,000원(= 30,000,000원 + 9,000,000원 +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액은 제1심이 인용한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대기, 중고 재봉기 납품대금 등으로 51,510,000원(= 제대기 납품대금 110,700,000원 + 중고 재봉기 납품대금 13,000,000원 - 호이스트 교체 및 금속검출기 비용 13,190,000원 - 추가 지급금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상 분할금의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5.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평균

판사강진명

판사구경모

- 1) 부대항소장에는 151,174,00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패소 부분(= 청구금액 151,174,001원 - 제1심 인용금액 110,510,000원)에 한하여 불복한 것으로 선해한다.
- 2) 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31.경 5,000만 원, 2015. 3. 31.경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는 '재봉기 신품기계 1대, 중고기계 3대를 나)와 같이 합의하여 계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3) 피고는 잔대금이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피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이 사건 제대기 대금에서 공제하여 잔대금이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한 것이므로 견적서에 기한 신품 재봉기 대금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잔대금 1억 원과 부가가치세 1,07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